

##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세 해설

안 병 윤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토지세담당

### I. 서 론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농업은 가장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하나이며 7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 산업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이러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유일한 소득과세인 기존 농지세는 1962년 지방세로 이양당시만 해도 지방세의 38.2%를 차지하는 중요 세원이었으나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 농민생활의 안정 및 농업지원 정책에 따른 기초 공제액의 증액, 징세노력에 미달하는 세액징수 등의 복합적인 이유에 따라 지방세중 비중이 가장 낮고(0.023%), 농지세 납세농가도 전체농가(1,480천호)의 1.5%인 21천호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생명공학 등의 발달에 힘입어 전통방식의 도·전작 방식의 농업에서 시설재배, 수경재배 등 재배방식의 변화, 소규모 가계형 영농에서 영농법인에 의한 대규모 기업형 농업화와 치료 등 특수목적에 위한 주문자 맞춤 생산 등 미래형 농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소득세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세정 운영의 담당자로서 개정된 세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이해시키고 수용가능성의 정도를 높혀 공정하고 효율성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농지세를 전혀 징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최근 농민 등 농업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농지세 및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 등 징세활동이 사회적 약자로서 농민의 보호, '농업 = 적자산업'이라는 인식의 팽배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면 개정 농업소득세 역시 농민이 수용하는 공정한 기준과 효율성있는 운영방

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명목상의 존재에만 그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의 개정 취지와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공정하고 효율성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득세로서의 농업소득세의 위상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한다.

## II.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

### 1. 기존 농지세체제의 문제점 개선

기존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나 세목명칭이 농지세로 되어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 성격이 불합치하였으며, 과세대상도 농지에서 발생한 소

#### <주요 개정 내용>

##### □ 과세대상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작물의 재배에 의한 소득으로 확대
- 신규 과세대상 작물재배 例
  - 콩나물·방울토마토 등 수경재배
  - 버섯재배·채취업(시설재배 및 야생채취 포함)
  - 난·분재 등 기타 시설재배업
  - 화초·채소의 종자·종근, 버섯 등의 종근 재배업

##### □ 필요경비 대상 확대 및 계산방법 개선

-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및 훈련비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추가
- 자본용역비를 차입금이자로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이자를 제외하여 경비 인정대상 제한
- 시설·농기계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에 의한 계산방법 명시

##### □ 중간예납제 폐지

- 개정전 법 제214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서 종래 연 2회 조례에 정하는 기간내에 예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중간예납 없이 신고기간(다음해 1월말까지) 일괄 납부

##### □ 특별징수 제도 폐지

- 개정전 법제218조에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에 특별징수 납세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실제 운영 사례 없어 폐지

##### □ 법인세 부과금지 조항 삭제 ⇒ 법인세법 규정

- 종래 지방세법에 규정한 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법인세법에 이관 규정
- 법인세액에서 기 납부한 법인의 농업소득세 공제는 동일

득 중 벼, 과수, 채소류 등 열거한 것에 한정하여 수경·시설재배 등 같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가 부과되어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에 대한 조세부과가 이원화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세는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작물 재배업의 영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으로 규정하여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로 일원화하였다.

## 2. 농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과세의 적실성 강화

농업은 대표적인 전통산업의 하나로서 종래 가계중심의 경작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여왔으나 상품생산형 경작의 일반화, 이농 및 농업인구의 노령화 등 농촌사회의 분화·개편에 따라 소단위 경작규모의 농업에서 영농조합법인 등 대규모 기업농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영농방식 역시 기존 농지상의 작물재배에서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을 이용한 재배방식이 도입됨과 동시에 유전공학과 유기농법 방식과 결합하여 미래형 고소득 농업이 일반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농업환경에 부응하는 세원관리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산정 등에서 변경하여 고정자산의 감각상각비, 차입금 이자, 결손이월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법인회계 방식의 본격도입 등 과세의 적실성을 강화하였다.

## 3.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종래 세법상의 제도로 인정되어 왔던 중간예납제, 특별 징수제도 등 제도적 실익이 없는 제도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 Ⅲ. 과세대상

## 1. 과세대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은 벼에 한함)을 재배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의 정의는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업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작물재배의 양태는 확장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주의깊게 확정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소득세로 개정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을 열거방식에서 개념정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예시하지 않은 작물재배도 과세대상이 되며, 건축물 등의 시설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농지세의 부과대상이던 농지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작물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작물재배전문화율(수익금액 기준)이 66%를 초과하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농업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2. 과세대상 작물 예시

세분류	세세분류	정 의	과세대상 예시	비 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채소작물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 재배·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 풋마늘, 풋고추 • 파, 양파 • 아스파라거스 • 참외, 수박, 멜론 • 잎 및 열매채소	(농지세 소채류 관련)
	화훼작물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	• 정원수 • 조원용 풀 : 잔디 • 꺾꽂이용 화초	(농지세 화훼류 관련) 잔디 등 조원용 풀, 관상수 등 추가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 생산업	• 채소, 화초, 과수의 종자·묘목 • 버섯 종균 • 접수 및 삼수 묘목 • 화초 종균 • 벼 모판	(농지세의 묘목 관련) 채소, 화초의 종자·종균, 버섯 종균, 벼 모판 등 추가

세분류	세세분류	정 의	과세대상 예시	비 고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과실작물	노지에서 딸기,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 작물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 호도,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li> <li>• 바나나, 키위, 버찌, 망고스틴, 무화과</li> <li>• 견과류 채취</li> </ul>	(농지세 과수 관련) 견과류 채취 추가
	음료용 및 향신용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 코코아</li> <li>• 고추, 생강, 녹차</li> </ul>	
기타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 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다른 분류에 속하지 않은 작물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 호프</li> <li>• 섬유작물(아마, 대마)</li> <li>• 비 및 솔 제조용 작물</li> <li>• 유지작물: 참깨, 들깨</li> <li>• 조물재료 작물: 담배</li> </ul>	섬유작물,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등 과세대상 추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나물 재배업</li> </ul>	추가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재배업	시설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추가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섯 재배</li> <li>• 작물배양 재배</li> <li>• 방울토마토 등 수경재배</li> <li>• 공예작물 시설재배</li> <li>• 음료용작물 시설재배</li> </ul>	추가

<注意>

1. 과세대상 규정방식을 열거주의에서 개념정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시되지 않은 작물의 재배소득도 과세대상이 됨
2. 종자 및 종묘 재배업에는 종자 및 종묘를 생산·판매하는 종묘회사도 포함됨
3. 시설재배는 농지가 아닌 건축물, 온실 등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농지세 과세대상이던 농지 위에 설치된 내구성이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포함함
4. 분제·화훼류 및 묘목을 판매하는 화원 등의 경우 생산자로부터 인수하여 판매하는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가식을 포함한 상품의 유지를 위한 관리행위가 추가되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운영세칙 197-1 참조)

## IV. 納稅義務者

### 1. 납세의무자

농업소득세는 과세대상인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함)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재배활동을 고려하면 과세현실에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는 그리 간명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여부는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실질상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이에 관한 사회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 명시된 몇가지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공동경작의 경우

먼저 2인이상의 공동경작에 의하여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2인이상의 공동경작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경작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공동경작자가 경비의 부담과 가게의 운영 등에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가게가 분리된 형제 또는 부자가 공동경작하는 경우라도 경작비용의 부담, 귀속된 농업소득의 별개성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가족공동 경작의 경우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은 조합법인이 아닌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의 농업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다. 가족 공동경영의 경우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농작물의 재배에서 수확까지의 영농일체 및 영농 비용의 부담과 소득의 처분을 주관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경작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가게를 달리하는 부자 또는 형제간의 공동경작은 많은 경우 가족 공동경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2. 납세의무자 관리방법

입법상으로 농업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작물재배를 통하여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여부를 관리하여 과세하는 활동은 그리 간명한 것은 아니다.

이점에 있어서 농업소득세 운영에서 작물재배활동을 하는 예비 납세의무자를 여하히 조사·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 가. 과세대상 작물 재배 현황 조사

농업소득을 발생시키는 농업작물의 재배활동은 전통의 방식대로 봄에 1회 파종하여 가을에 1회 수확하는 단계는 지났다. 온실 등 시설내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재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간도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유동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 작물의 현황을 6개월 주기로 반기 1회이상 전수조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내의 과세대상 작물현황 조사·관리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파종후 수확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 소요되는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작물 재배 대상으로 하여 수시 조사를 재배시기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과세대상 관리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물재배 시기에 따른 적기 조사 (예 : 송이버섯 채취 10월말 전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중점관리 대상 선정·관리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인 작물을 재배하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활동의 결과로서 농업소득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며, 당해 작물의 재배활동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농업소득을 발생시키는지 관리하는 것은 농업소득세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무수한 예비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경비 및 수입의 발생을 추적하여 소득을 확정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점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험적 방법 또는 소득추계적인 통계학적 방법을 기초로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농업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배 면적 등을 산출하여 이 기준내에 있는 예비납세의무자를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점 관리대상으로는 개정 농업소득세의 취지를 살려 영농 기업·법인 전체, 수경·시설재배 등 신규과세대상 재배자를 당연 포함하여 과세자료 확보와 동시에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재배자의 경우에는 "작물별 과세가능 최소면적" 이상 재배자를 중심으로 중점관리하여 전수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과다소요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과세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작물별 과세가능 최소면적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정에 맞게 작성운영하되 산정 방법의 요체는 필요경비와 기초공제 등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작물별 최소면적 단위를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관리는 지방세법상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한 일기장, 회계장부 등 장부비치 의무를 부여하고 경비지출내역과 수입발생내역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 경비지출 내역은 지방세법 시행령 153조에 의한 항목별로 구분기재하고 수입발생내역은 출하량, 판매소득 (출하경로별 출하량·단위당 판매가격 포함)를 기재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주기적 작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83호 서식에 의한 기록관리함

< 작물별 과세가능 최소면적 산정방법 >

□ 개 념

- 작물별 평균 소득 및 경비분석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 재배면적

□ 산정단위 :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정

□ 산정방법

- 과세대상 작물별 단위(300m<sup>2</sup>)당 순소득(총소득 - 총필요경비)를 구한후, 순소득이 560만원을 초과하기 위한 재배면적 산출
- 이 경우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경비가 체감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산출

(예) 양파의 경우 단위(10a)당 소득이 800만원, 총 필요경비가 6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순소득 = 800만원 - 650만원 = 150만원
- 최소 단위면적 = 560만원 / 150만원 = 3.8

⇒ 필요경비의 체감을 감안하여 단위면적의 3.5배인 35a를 과세대상 최소 재배면적으로 결정

□ 산정시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작물별 평균소득과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과세가능 최소재배 면적 확정
- 과세가능 최소재배 면적 확정시 『별첨 2』~과세대상 최소재배 면적 자료를 참고하고, 『별첨 2』에 누락된 작물재배업은 각 시·도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
- 정확한 과세자료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하여 적실성 있는 과세대상최소재배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리



과 동시에 소득신고 유도하고 과세대장을 작성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를 전수관리하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업무효율성의 측면에서 고려된 방안이므로 중점관리대상인 예비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액에 미달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신고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은 별지 89호서식에 의한 과세대장을 작성·공람하여야 한다.

## V. 納稅地 및 課稅期間

### 1. 납세지

농업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이며 작물재배지가 2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구에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납세지별 과세표준액 및 세액은 전체 소득금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결정한다.

※ 안분세액 = 총세액 × 당해자치단체 소득금액 / 소득금액 총액

### 2. 課稅期間

농업소득세는 성격상 소득세로서 소득발생의 주기별로 주기당 1회 납세토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매년 1. 1~12. 31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정기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기부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 적기의 징수가 불가하여 농업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수시부과의 사유 및 기간 >

- 수시부과 : 1. 1부터 다음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발생 소득
  - 납세의무자의 사망시 : 1. 1~사망일
  - 납세의무자의 국외 이주시 : 1. 1~출국일
  - 농업소득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1. 1~상당한이유 발생시기 까지
  - 납세의무자가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 농업소득세액 결정후 당해 농업소득세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VI. 課稅標準

$$\begin{aligned} \text{과세표준} &= \text{농업소득금액} - (\text{비과세소득} + \text{감면소득}) - \text{기초공제액} \\ \text{소득금액} &= \text{작물별 소득금액의 합산} = \sum(\text{작물별수입금액} - \text{작물별필요경비}) \end{aligned}$$

조세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액의 확정이다. 통상 납세의무자의 확정보다 과세표준액의 확정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농업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수입 및 경비의 발생 등 확정해야 할 사안이 복잡하여 다른 어떤 지방세보다 과세표준액을 확정하기 곤란하다.

물론,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내역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신고내역의 확인을 통한 세액의 확정부과와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수입과 경비의 조사확정이라는 복잡한 결정과정을 거쳐 부과하고 이러한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수용이 될 정도로 신뢰성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정자산의 감각상각비, 차입금 이자, 결손이월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법인회계 방식이 본격도입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더구나 현재 농민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복잡한 회계방식에 적실성 있는 운영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영과 홍보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을 위한 수입의 확정, 필요경비의 산출, 기초공제액의 적용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해설은 후술하는 요약 내용으로 대체한다.

다만 과세표준액을 확정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농업소득세는 납세의무자별 전국합산 누진과세원칙을 택하고 있으므로 작물재배지가 2개이상 시·군·구에 있는 경우의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계산하여야 하며 시·군·구별 납세액은 각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VI-1. 收入金額

$$\text{수입금액} = \frac{\text{작물을 재배·수확하여 판매한 수익금}}{\text{수익금}} + \frac{\text{비판매·가공판매의 경우 수확당시의 거래시가 환산금액}}{\text{수익금}}$$

○ 수입금의 개념

- 재배한 작물을 수확·판매한 경우 수입금 및 미수금을 포함함
- 수확된 농산물을 신고납부기한까지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가소비용 또는 가공 판매를 위한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수확량에 수확당시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수입금의 귀속

- 작물을 재배하여 농지 또는 시설물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

<注意> 수확한 날의 정의

1. 당해 재배 작물의 수확기가 도래되어 채취하여 판매·자가사용 등을 위해 보관상태에 들어가거나 식재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채취 또는 보관일이나 판매일
2. 수확기 도래 이전 재배단계에서 재배자가 재배한 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일

○ 수입금 계산방법

구 분	장부금액에 의한 계산	직권조사에 의한 결정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li> <li>•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li> <li>• 장부 등의 내용이 장부 기장 방법,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그 내용에 따른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 : 수입금액=농지등급별 기준 수확량×정부 양곡매입가격</li> <li>• 그 밖의 작물 : 수입금액=수확량×수확당시 생산지거래시가</li> </ul>

- ※ 정부 양곡매입가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년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급가격임
- ※ 벼의 경우 재난·기타 사유로 작황이 불량하여 수확량이 농지 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한 때는 실제수확량을 기준으로 계산
- ※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 : 보충설명 및 별첨자료 참고

**< 작황 및 거래시가 조사 >**

-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작황조사
  - 재배작물의 출하시기에 맞춰 작황조사 실시 및 관리대상 작물재배자의 기재내용 확인
  - 작황조사주기 : 출하시기당 3회 이상
- 출하경로별 주간단위 평균거래 가격 조사·관리
  - 지역실정에 맞는 조사기간 설정운영(주간, 월간)
  - 인터넷 농산물 가격 관련 사이트, 농민신문, 농업정보지 등 이용

### <보충설명 1> 농지의 기준수확량

1. 농지등급(기준수확량 등급의 설정)
  - 기준수확량  
벼를 경작하는 농지(전 또는 답)에서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수확량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
  - 농지의 기준수확량등급은 평년작의 경우 생산되는 1㎡당 벼 수확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 산정된 답 100㎡당 평균 수확량에 상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을 때에는 그 수확량의 최근 하위등급 수확량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
2. 농지등급의 결정시기
  -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공유수면의 매립·간척·개간 등으로 새로이 답을 조성한 경우 등)
  -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농지(경지정리, 관개시설 정비, 토사유출 등의 사유발생의 경우)
3. 농지등급의 결정방법
  -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농지등급은 지역간, 필지간 권형이 유지되도록 결정
  - 농지의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정
4. 농지등급 결정의 열람과 심사청구
  - 결정 또는 수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일간
  -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 공고
  - 농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

## VI-2. 必要經費

필요경비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작물재배에 투입된 비용의 합계

- 필요경비의 정의  
필요경비는 생산비 중 자가노임 등 경영자 귀속경비를 제외한 농작물 재배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경영비적 개념임
-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범위  
- 과세대상 작물의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한함  
(예 : 소요경비 중 농작물 재배에 투입되지 않는 금액은 경비제외)

- 당해 과세기간 이전의 투하비용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실현되고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만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  
(예 :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의 경우 과종이후 재배기간에 투하된 비용은 당해 수확 연도의 경비로 계산)

가. 필요경비의 종류

구 분	내 역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용노임만 포함 : 일수 × 단가(농업부기에서는 고용근로비로 표현)</li> <li>※ 가족노임 및 수입 귀속자 노임 제외</li> </ul>
종 자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확보 종자의 시가 : 자가수익하여 소득에 포함된 것</li> <li>구입 종자·종묘·종근의 구입가</li> </ul>
비 료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입비료 : 구입비용</li> <li>자급비료 : 생산비용 방법(노임 등)</li> </ul>
농 약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방제에 필요한 약의 대금</li> </ul>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포함)의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li> <li>※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 (계산방법 : 별첨)</li> </ul>
농기구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삽, 호미 소농구의 구입비</li> </ul>
농기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업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li> <li>※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 (계산방법 : 별첨)</li> </ul>
공 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재배시설, 농지에 대해 부과된 모든 공과금</li> <li>건축물 등 재배시설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등의 조세와 수리(水利)비용포함(수세)</li> </ul>
제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 제재료비라 하며, 작물재배에 사용된 소비적 재료비(가마니, 봉지, 비닐 등)</li> </ul>
수 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배시설과 농기계가 고장,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정지되거나 저하된 것을 원상회복하는데 투입된 비용</li> <li>※ 유지관리비와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유의</li> </ul>
차입금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농자금 등 차입금 이자</li> <li>※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외</li> </ul>
임 차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경지, 농기계, 축력 등을 임차 사용한 경우의 소작료, 사용료, 임차료</li> </ul>
광 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사용비, 유류구입비 등 연료비를 말함</li> </ul>
해외시찰·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에 한함</li> </ul>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li> <li>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li> </ul>

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당해 경비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귀속함.
    - 다년생 작물의 재배의 경우 수확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일괄 계산함
  - 경비지출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실제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원인행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경비로 계산
- 예) 부과된 공과금을 체납하여 다음연도에 납부하더라도 공과금의 필요경비 귀속은 부과 시점이 포함된 연도로 귀속

다.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구 분	장부금액에 의한 계산	직권조사에 의한 결정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li> <li>•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경비가 입증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li> <li>• 장부를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li> </ul>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작물경비율을 가지고 조사결정</li> </ul>

- ※ 영농법인에게 벼를 위탁영농하는 경우 위탁영농비를 필요경비로 산정
- ※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농기구구입비, 제재료비, 광열비는 농업진흥청 발간 지역별 작물별 필요경비자료 원용하여 산정 가능

**< 평균 필요경비 산정 방법 >**

- 농업소득 표준농가 지정 운영
  - 중점관리 대상 재배자가 아닌 작물별 전업농 2~3인 선정
  - 중점관리대상 작물 재배자에게 부여한 장부기재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결정시 반영
- 작물별 필요경비 산정 방법(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
  -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물별 필요경비 조사자료를 기초로 정하되 읍·면·통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함
  - 산정시에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농정관련부서 및 농협 등 유관기관의 조사자료나 독농가의 영농방식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함
  - 시군구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시도별 권형조정을 할 것
  -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관상수 등 다년생 작물로서 평균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균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산정가능
  - ※ 이 경우 평균 필요경비율은 필요경비 항목별 필요경비율 또는 전체 필요경비율을 구하여 산정함
- < 활용가능 외부자료 >
  - 농업 정책자금 대출시 제출한 경영기록
    - 개인 영농인 및 영농법인이 3억이상의 대출시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경영회계자료 제출
    - ※ 대출목적으로 소득을 과다계상할 가능성이 있음
  - 농업진흥청 작물별 소득자료
    - 매년 상반기 전년도 기준 작물별 소득율을 작성 배포함

<보충설명 2> 재배시설 및 농기계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1. 감가상각의 개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방법

2. 감가상각 대상 농업용 자산 및 내용연수

- 감가상각 대상 농업자산
  - 1년이상 사용가능한 재배시설 : 건축물,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숙주목 등
  - 1년이상 생육가능한 작물 : 사과, 배 등의 과수
  - 농기계 : 운반차량, 트랙터, 콤팩트 등 농업용 기계 장비, 농업용 항공기 등

<注意>

1. 장기할부매입자산은 전액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에 상관없이 감가상각 대상
  2.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
- 내용연수 : 세무회계 처리상 자산의 사용가능 기간
    -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가능
      - ※ 작물재배 시작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 까지 신고
    -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있어서도 계속 적용함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예) 중고농업용 항공기 : 6년에서 12년사이에서 신고 (기준내용연수 : 12년)

<자산별 내용연수>

구 분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 범위)	포 함 자 산
과 수	20년(15 ~ 25년)	• 사과, 배 등의 각종 과수
농기계	5년(4년 ~ 6년)	• 농업용 차량, • 트랙터, 콤팩트 등 농업용 기계·장비
	12년(9년 ~ 12년)	• 농업용 항공기(농약살포용 등)
시설물	20년(15년 ~ 20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벽조, 토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건물 포함)과 구축물
	40년(30년 ~ 50년)	• 철골·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화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5년(4년 ~ 6년)	• 온실, 내구성 있는 비닐하우스 등 내용연수 20년·40년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 •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숙주목 등

※ 내용연수의 특례인정 및 변경

- 특례인정 사유(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참조)
  - 재배지가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시설, 기계 설비등 자산의 부식·마모·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 신형 농기계의 보급, 영농방법의 개선 등으로 기존농기계를 새 설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영농규모의 변경 등으로 장비 가동율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참조)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 변경
- 내용연수 재변경은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함



### 3.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 감가상각비의 인정범위

- 상각범위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신고한 방법(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 소득신고자가 상각범위액 보다 많은 감가상각비(상각부인액)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 상각범위액 범위내에서만 경비로 인정
-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시인부족액)하는 범위내에서 경비로 인정

※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에 충당못함

○ 상각방법 및 계산

< 정액법 >

$$\text{상각범위액 (감각상각비)} = \text{취득가액} \times \text{상각률(1/내용연수)}$$

<예> 내용연수 5년인 경운기의 취득가액이 700만원인 경우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 계산 : 700만원 × 1/5 = 140만원
- 답 : 5년동안 매년 14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인정

< 정률법>

$$\text{상각범위액} = \text{미상각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부인액)} \times \text{상각률}$$

<예> 내용연수 5년인 경운기의 취득가액이 700만원인 경우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 첫째해 : 700만원 × 0.451 = 3,157,000
- 둘째해 : (7,000,000 - 3,157,000) × 0.451 = 1,733,193
- 셋째해 : (7,000,000 - 4,890,193) × 0.451 = 951,523
- 넷째해 : (7,000,000 - 5,841,716) × 0.451 = 522,386
- 마지막해 : (7,000,000 - 6,364,102) × 0.451 = 286,790

※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구 분	취 득 가 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산	매입가액 + 부대비용 (취·등록세포함)
자가 제작·생산·건설 등에 의한 취득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취·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산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시가초과액은 제외)
증여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취득	취득당시의 시가

<注意>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매입(또는 고가현물출자)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자산매입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시점의 별도 필요경비임
-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
- 과세기간 중 취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 12
- (예) 상기 예에서 3년차 7월에 양도한 경우
  - 정액법 :  $140\text{만원} \times 7 / 12 = 816,667\text{원}$
  - 정률법 :  $951,523\text{원} \times 7 / 12 = 555,055\text{원}$
- 과세기간중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위 예에서)
  - 정액법 :  $(140\text{만원} - 816,667\text{만원}) \times \text{남은자산 취득가액} / \text{자산전체 취득가액} = \text{남은자산 취득가액} \times \text{상각률} \times 5/12 = \text{상각범위액}$
  - 정률법 :  $(\text{자산전체 취득가액} - \text{상각누계액}) \times \text{상각률} \times 5/12 \times \text{남은 자산 취득가액} / \text{자산전체 취득가액} = \text{상각범위액}$

<용어해설 >

-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 정률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

4. 상각방법의 결정

- 상각방법의 신고 및 적용

구 분	건물 및 구축물	농기계, 건축물 제외시설
신고가능 방법	정액법	정액법, 정률법
비신고시 적용	정액법	정률법

- 작물재배 시작일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농업소득세 신고납

부 기한까지 신고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용한 계산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있어서도 계속 적용
- 상각방법의 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참조)
- 변경 사유
  -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 재배
  -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농업인의 감가상각 자산 인수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20/100 이상), 경제여건 변동
- 신고기한 및 승인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할 과세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신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승인여부 통보

<보충설명 3> 차입금 이자

1. 인정범위

- 작물의 재배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 작물재배를 위한, 건축물, 설비, 기계 등 자산투자비 차입금
  -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소농기구 구입 등 물품구입비 차입금
  - 인건비, 공과금, 수립비, 광열비 등 운영비 차입금
  - 기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작물재배 관련 차입금
- 특수한 경우의 인정여부
  - 가족 공동경작의 경우 : 가족 일원의 명의로 차입한 작물재배관련 차입금이면 인정
  - 타인명의 차입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이자)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인정 (타인이 담보물 제공시 제외)
  - 장기할부방식에 의한 자산취득의 할부대금 이자
    - 지급이자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상
    - 법인의 경우는 할부구입에 의한 발생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취득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계상

2. 필요경비 귀속시기

- 지급하였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
- 지급약정일 도래이전이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미 경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당해이자를 계상한 때의 필요경비로 인정

(예) 매년 3월말 이자를 지급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입년도부터 연말 기준 이자를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 계상연도 필요경비 인정

3.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참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채권자의 성명, 주소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대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이자
- 작물재배와 관련없는 차입금 이자
-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 농업법인중 주권상장법인과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농지, 재배시설, 농기계 등의 매입·제작·건설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 다음 각 자산별 일자까지 지급한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대상임
    - 건축물 등 재배시설 : 취득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일자
    - 농지 : 대금 완불일과 당해 토지를 작물재배에 최초 사용일중 빠른 일자
    - 농업용 기계장비 : 취득일 또는 실제사용일 중 빠른 일자
  - 상기일자 이후 지급이자는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로 인정

4. 필요경비 인정의 특례

- 차입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전용자금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 차입금의 일시예치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에서 공제
- 차입금 상환연체에 의한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가산금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가산금액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봄

<보충설명 4> 결손금 및 결손이월금

1. 개 념

- 결손금
 

작물재배연도의 필요경비가 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 결손이월금
 

결손금액을 당해 작물재배자의 그후 작물재배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월하는 금액

2. 공제범위 및 방법

-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후의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먼저 발생한 과세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3. 적용 예
  - 금년(2001년)의 소득이 1,200만원이고 과세이전 연도인 96년 600만원, 97년 500만원, 98년 400만원, 99년 30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결손금은 96년부터이며
    - 96년부터 순차적으로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고 98년도분 300만원, 99년도분 2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됨

<보충설명 5> 특수한 경우의 필요경비 처리 예

1. 다년간 재배로 1회 소득을 발생시키는 작물
  - 대상 예 : 인삼, 도라지, 다년생 약초 등
  - 경비처리방법
    - 재배시작연도부터 수확연도까지 경비항목에 해당되는 소요경비를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정
    - 이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경비만 인정
2. 다년간 소득을 발생시키는 과수, 시설재배 등을 신규로 식재 또는 시설을 건축하여 재배하는 경우
  - 대상 예 : 과수원, 시설재배
  - 경비처리방법
    - 묘목구입비, 인건비,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 각 재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산정
    -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발생한 경비는 결손금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 ※ 묘목 구입비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첫해의 경비로 계상하고 결손금 처리할 수도 있음
3. 타인이 재배하던 다년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작물이나 작물재배 시설을 승계취득하여 재배하는 경우
  - 대상 예 : 타인이 재배중인 과수원이나 버섯 재배시설 등의 취득 기타 작물재배시설의 승계취득에 의한 작물재배
  - 경비처리방법
    - 과수, 재배시설 등 감가상각 대상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감각상각하여 경비산정 (중고자산의 감가상각 참조)
    - 취득가액 중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토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감가상각해야 함

### VI-3. 課稅標準額 및 稅額 確定

- 소득금액은 작물별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임

$$\text{소득금액} = \text{작물별 소득금액의 합산} = \sum(\text{작물별수입금액} - \text{작물별필요경비})$$

- 과세표준액은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임

$$\text{농업소득세 과세표준} = \text{농업소득금액} - \text{기초공제}$$

- 기초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과세표준 산출단계에서의 소득금액공제이며 기초공제액은 560만원 임.

<주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경우라도 기초공제는 1회만 함

- 수시부과시 기초공제액 계산
  -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경우
  - 월할계산액 = 560만원 × 월수/12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 세액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최저세율 3%에서 최고세율 50%까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VI-4. 稅額 計算 特例

<대 상>

-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 산출

<계산방법>

- 납세의무자별로 농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기초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산출세액에 당해 시·군의 농업소득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시·군구의 농업세액으로 함

· 시·군별세액=산출세액×농업소득비율  
· 농업소득비율= 당해시·군농업소득 / 총농업소득금액

<통·수보 절차>

- 시장·군수는 자기관할 지역안에 다른 시·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작물재배에 대한 농업소득 금액의 신고를 받거나 조사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별지 제80호 서식)
- 통보를 받은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작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VII. 申告·調査決定 및 徵收

### 1. 確定申告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다음년도 1월말까지 1년간 농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개이상의 시·군·구의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타시군 소득금액 신고서 부분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농지소재지, 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기재한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작물재배지별로 납부(신고와 동일)하고 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決定과 徵收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농업소득을 기초로 결정하고, 신고한 금액이 부당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업 소득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인 작물재배자에 대하여 반드시 소득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이유이다.

신고납부한 금액과 확정결정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환부하거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3. 隨時賦課

#### 가. 수시부과의 의미

수시부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기간내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확정결정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득발생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조세처분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유의 발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요건은 전술한 바와 같다.

#### 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및 징수

수시부과기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역시 수시과세 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에 의한 산출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초공제액 계산 역시 1년간의 기초공제액 560만원에 개월수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수시부과시의 기초공제액 = 560만원 × 수시부과기간의 월수 / 12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 납부기간 고지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26조의 납기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당해 과세표준은 농업소득세 확정결정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少額不徵收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2이상의 시·군에 걸쳐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징수비용대 징수액의 관계를 고려하는 소액부징수 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라 각각의 시군 단위로 산출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 VIII. 기타 운영 사항

농업소득세를 운영하는 과세 주체는 기타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상의무를 준수하여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바 중요한 것들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1. 農業所得調査委員會의 設置・運營

- 구성단위 : 동·읍·면 단위
- 위촉 및 자격요건
  - 동·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중 동·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 자격요건
    - 새마을 지도자 또는 동·이장
    -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자
    -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자
- 위원회의 임무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및 재해의 조사
  - 작물의 거래가격 및 생산량 등 농업소득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3. 農地 및 栽培施設의 變動申告

- 납세의무자의 신고
  - 농지 또는 작물재배시설의 소유권 및 경작자 변동
  -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 작물재배지 변동신고 및 직권조사 통지
  - 작물재배자가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지 제88호 서식에 의함
  - 시장·군수가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3. 課稅臺帳 管理 및 記帳義務 賦與

-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4. 농지등급, 所得金額 결정 등의 供覽

#### 가. 공람대상

- 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조사결정 내용
- 지역별·작물별 필요경비 및 평균필요경비(율) 산정내용
- 소득금액 신고내용 및 조사결정 내용

#### 나. 공람기간

- 소득금액 및 세액확정 : 익년 2. 21 ~2. 28
- 필요경비(율) 결정시 : 결정직후 7일간

#### 다. 공람방법

- 공람실시내용(시간, 장소등)을 이·동 계시관과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 계도
- 읍·면·동 사무소에 공람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비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도모
-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은 반드시 현지 확인후 공정하게 처리

### 5. 農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賦課禁止

-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214조)
- 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법인세법 58조의2)

## IX. 非課稅 및 減免

### IX-1. 非課稅

####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과 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1) 대상

학교·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가 농지로서 학술·시험·실습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또는 임업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학교, 고아원 등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고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거나 고용인부 및 일용인부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하고(운영세칙 201-1), 자가소비용이라 함은 유아원·양로원 등에서 부양인원을 직접 급식하는데 사용하는 농산물을 의미하며 이를 판매하여 타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운영세칙 201-2).

##### (2) 비과세 신청 및 결과 통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비과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별지 제7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권 비과세 규정이 없는 입법적 태도로 보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비과세할 의무는 없다.

다. 개간·간척지 등에 대한 비과세

(1) 비과세 대상 작물재배지

비과세 대상이 농업소득은 개간지와 간척지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이며 개간지는 임야, 황무지, 초생지, 무택지, 폐염전 등 농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농지로 조성한 토지를 말하고 간척지는 하천, 바다, 호소 등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농지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비과세 요건

개간 또는 간척의 경우 관련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간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아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된 것이어야 하고 간척은 공유수면 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농지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개간·간척의 경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장·군수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3) 비과세 기간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서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판단·결정한다. 그 방법은 개간·간척에 소요된 총비용을 당해 농지의 1년간의 간주농지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기간을 비과세 기간으로 한다. 비과세 기간은 비과세 신청 또는 직권조사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 비과세기간 = 개간·간척비용 / 간주 농업소득 금액

산정된 비과세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개간·간척비용의 조사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공사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총 공사비를 조사 결정함.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인근 유사농지의 개간·간척비용을 참작하여 결정하거나 농업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결정함.

※ 농업소득 산정 방법 : 기 설명한 방법에 의한 소득산정액

(4) 비과세기간의 신청 및 결정

지방세법 별지 제7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 소유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비과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방세법별지 제79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라. 황지화 및 재배시설 파손에 대한 비과세

(1) 요건

천재·지변·전쟁·사변·화재의 사유에 의하여 농지가 황지로 되거나 작물재배시설이 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군수의 직권조사결정에 의한다.

(2) 비과세 기간

비과세 사유가 발생한 해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피해의 정도 및 농지·시설의 복구비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비과세기간 중 다시 비과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기간과 황지발생 사유에 의한 비과세 기간은 합산가능하다.

예) 개간에 의한 비과세 기간(10년)중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황지에 의한 비과세 결정 (5년)이 있는 경우

- 황지에 의한 비과세 5년 + 개간에 의한 비과세 남은 기간 8년 = 향후 13년동안 비과세

**IX-2. 減 免**

농업소득세 감면의 요건은 지방세법 농업소득세 분야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총칙부분의 지방세 일반원칙에 따라 감면 요건인 천재,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자력상실의 경우, 자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사유발생 30일이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작물재배지의 소유지·지번·지목·면적·피해년월일·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해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서식 등 기타 사항은 비과세와 동일).

<별첨 1>

농지 기준수확량 등급표

(’84. 1. 1부터 適用)

등급	100㎡당 수확량(kg)	등급	100㎡당 수확량(kg)	등급	100㎡당 수확량(kg)	등급	100㎡당 수확량(kg)
1	1.5	11	16.5	21	33.0	31	65.0
2	3.0	12	18.0	22	36.0	32	70.0
3	4.5	13	19.5	23	39.0	33	75.0
4	6.0	14	21.0	24	42.0	34	80.0
5	7.5	15	22.5	25	45.0	35	85.0
6	9.0	16	24.0	26	48.0	36	90.0
7	10.5	17	25.5	27	51.0	37	95.0
8	12.0	18	27.0	28	54.0	38	100.0
9	13.5	19	28.5	29	57.0	39	110.0
10	15.0	20	30.0	30	60.0	40	120.0

<별첨 2>

작물별 과세가능 최소 재배 면적

(기준 : 년 1기작/10a)

작 목 별	수 량 (kg)	수 입 (원)	필요경비 (원)	소 득 (원)	소득률 (%)	최소재배면적	
노	봄 무	4,505	932,477	356,187	576,290	61.8	100a
	가 을 무	4,667	1,219,799	314,704	905,095	74.2	60a
	고랭지무	3,775	1,164,220	411,567	752,653	64.6	80a
지	봄 배 추	6,059	787,712	387,905	399,807	50.8	150a
	가을배추	7,256	1,730,271	382,151	1,348,120	77.9	50a
	고랭지배추	4,093	1,387,756	455,907	931,849	67.1	80a
채	양 배 추	5,622	756,624	343,384	413,240	54.6	150a
소 (16)	대 파	3,127	2,012,170	563,581	1,448,589	72.0	50a
	쪽 파	2,649	2,744,576	937,758	1,806,818	65.8	40a
	생 강	1,278	1,061,252	684,678	376,574	35.5	200a
	미 나 리	4,529	4,856,548	1,472,909	3,383,639	69.7	20a
	당 근	2,993	1,664,503	509,188	1,155,315	69.4	50a

작 목 별		수 량 (kg)	수 입 (원)	필요경비 (원)	소 득 (원)	소득률 (%)	최소재배면적
	노지수박	2,454	1,266,891	557,011	709,880	56.0	100a
	마 늘	1,141	1,915,426	750,535	1,164,891	60.8	50a
	양 과	5,801	1,403,489	444,396	959,093	68.3	80a
	노지 고추	285	1,868,956	417,872	1,451,084	77.6	50a
시 설 업 근 채 류 (8)	무(하우스)	5,604	1,680,717	684,729	995,988	59.3	60a
	배 추(하우스)	6,858	1,309,456	796,251	513,205	39.2	120a
	시설상추(포기)	3,451	2,844,693	1,362,074	1,482,619	52.1	40a
	시설상추(치마)	5,031	4,775,017	2,213,047	2,561,970	53.7	25a
	취 나 물	430	3,484,776	1,245,280	2,239,496	64.3	30a
	부 추	5,341	5,322,916	1,516,778	3,806,138	71.5	20a
	들 껏 잎	4,569	14,788,926	3,468,789	11,320,137	76.5	10a
	시 금 치	1,933	2,114,862	993,774	1,121,088	53.0	60a
시 설 과 채 류 (13)	시설고추	5,139	13,266,709	6,609,017	6,657,692	50.2	10a
	오 이(축 성)	14,488	14,162,755	6,707,459	7,455,296	52.6	10a
	오 이(반축성)	10,317	8,066,987	3,844,870	4,222,117	52.3	15a
	오 이(억 제)	6,089	6,797,786	2,584,504	4,213,282	62.0	15a
	토 마 토(축 성)	8,307	10,555,340	5,043,810	5,511,530	52.2	10a
	토 마 토(반축성)	7,943	6,788,349	2,799,896	3,988,453	58.8	15a
	방울토마토	6,370	11,816,169	6,213,764	5,602,405	47.4	10a
	시설호박	6,033	4,103,257	2,001,799	2,101,458	51.2	25a
	딸 기(축 성)	3,107	9,117,011	3,598,925	5,518,086	60.5	10a
	딸 기(반축성)	2,765	7,508,870	3,299,046	4,209,824	56.1	10a
	시설참외	2,852	4,399,232	1,571,203	2,828,029	64.3	15a
	수 박(반축성)	3,831	3,365,363	1,315,781	2,049,582	60.9	15a
	시설가지	6,862	8,579,564	4,424,573	4,154,991	48.4	15a
노 지 과 수 (9)	사 과	2,188	2,951,740	1,149,909	1,801,831	61.0	30a
	배	2,490	4,140,608	1,465,392	2,675,216	64.6	30a
	복 승 아	1,819	2,903,795	857,839	2,045,956	70.5	30a
	노지포도	1,889	2,990,746	940,875	2,049,871	68.5	30a
	노지감귤	3,548	1,462,921	649,941	812,980	55.6	80a
	단 감	1,311	1,587,127	568,883	1,018,244	64.2	60a
	대 추	292	1,340,612	375,671	964,941	72.0	70a
	유 자	1,090	1,396,472	492,694	903,778	64.7	70a
참 다 래	1,743	2,959,219	849,634	2,109,585	71.3	25a	
화훼(5)	장 미	92,510본	21,095,154	11,321,926	9,773,228	46.3	10a

※ 2000년도 발행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임

<별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작물재배업의 정의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분류기호 011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 임업이외의 수목재배(정원수 등)활동, 산림용 이외의 묘목(정원수 및 가로수 묘목 등)·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을 포함

□ 과세대상 작물 예시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중 벼재배업만 과세대상임

<예시>

-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 감자, 고구마 재배
- 메밀 재배
- 옥수수, 콩, 녹두 재배

- 채소작물 재배업 (01121)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시>

- 풋마늘 및 풋고추 재배
- 파 및 양파 재배
- 아스파라거스 재배
- 참외, 수박 및 멜론 재배
- 잎 및 열매 채소 재배

- 화훼작물 재배업(01122)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정원수 재배
- 조원용 풀 재배
- 절화용 화초 재배
- 분재 재배

- 종자 및 묘목 생산업(01123)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 버섯종균 생산
- 접수 및 삽수 묘목
- 화초 종근 생산
- 벼 모판 생산

<제외> :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 생산(02011)



○ 과실작물 재배업(01131)

노지에서 딸기, 견과(낙화생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밤, 호도 및 대추 재배
-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 견과류 채취(식용야생)
- 바나나 재배
-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 버찌 및 무화과 재배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2)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 생강 재배
- 정향 재배
- 녹차용 작물 재배
- 커피 재배
- 코코아 재배

<제외>

- 커피, 차류 가공(15491 또는 15492)
- 향신료 가공(1545)

○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인삼 재배
- 호프 재배
- 섬유작물 재배
-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 유지작물 재배
- 조물재료 작물 재배

○ 콩나물 재배업 (01151)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2)

시설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59)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버섯 재배
- 작물배양 재배
-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 공예작물 시설재배
-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 과세대상 규정방식을 열거주의에서 개념정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기 예시된 작물 이외의 작물재배에 따른 소득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에 유의